

[별표 7] <개정 2008.9.11>

국민주택기금운용·관리사무 및 채권등록업무수수료(제37조제1항 관련)

1.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월별 국민주택기금 운용·관리사무에 관한 위탁수수료의 산정은 다음의 산정식에 의한다.

$$\Sigma(X_i a_i)$$

※ "X_i" 및 "a_i"는 제2호의 표 중 각각 수수료동인 및 수수료단가를 말한다.

2. 제1호에 따른 수수료동인별 수수료단가

구 분	과 목	수수료동인(X _i)		수수료단가(a _i)
조 성	청 약 저 축	신규좌수		13,209.38원
		잔고좌수		558.12원
	채 권	발행/해약/상환건수		6,285.74원
		MT상환매수		119.34원
운 용	사업자대출	신규좌수	공공기관	1,937,042.51원
			민간 대출승인	8,232,430.65원
			민간 준공급지급	9,200,951.91원
			매입임대	665,858.36원
			대 환	605,325.78원
			전 환	221,952.79원
		잔고좌수	공공기관	1,224.87원
			민 간	11,023.84원
		세대수	세대별 근저당 분리	27,969원
	수요자대출	신규좌수		269,752.24원
		잔고좌수		3,417.18원

비 고 : 1. 수수료동인은 정상처리된 것만을 말한다.

2. 사업자에게 대출된 자금 중 법인 앞으로 대환하는 경우는 사업자대출, 개인 앞으로 대환하는 경우는 수요자대출로 한다.

3. 사업자대출 중 공공기관 및 민간에 대한 신규좌수 수수료동인에는 매입임대, 대환, 전환 및 「임대주택법」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.

4. 잔고좌수는 월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
5. 세대별 근저당 분리에 따른 세대수는 별도의 잔고 좌수로 보지 아니한다.

3. 영 제91조제5항에 따른 월별 채권등록업무 수수료의 산정은 다음의 산정식에 의한다.

$$\text{월별 채권등록업무 수수료} = \text{영업일기준 일별 150만원} + \text{영업일기준 일별 등록}$$

금액 100억원 초과금액의 1/100,000